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에 既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하여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속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6항)

- 자연녹지지역에 既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4년) 건폐율 상향 특례(20%→ 30%) 부여

나. 기타 개선(별표5~7, 9, 10, 15~16, 18, 19, 21, 22)

- 건축법령이 개정(리모델링 조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4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증축하는 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별표 5 제2호파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파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축사·도축장·도계장”을 “축사·도축장·도계장

및 아목 중 축사·도축장·도계장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바목 중 “것”을 “것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사목 중 “것”을 “것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차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라목에 해당하는”을 “라목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자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라목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라목에 해당하는”을 “라목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자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마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바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마목 중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을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을 “같은 호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마목 부터 사목까지”로,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을 “아목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양어시설 및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생략)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u>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u>

⑦ ~ ⑨ (생략)	<u>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u> <u>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u> <u>나. 증축하는 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u> ⑦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11